201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(안)

2016. 7. 1.

보건복지부
국민연금공단

I.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개요

□ 보고 배경

○ 2015년도 기금운용본부 **전체 성과급 지급률**과 기금운용**본부장의 성과급지급률**에 대한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고

*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제3조제3항제2호

□ 성과급 지급의 최소 기준

○ 기금운용본부(이하 "운용본부"라 함)의 **3년 평균 운용수익률**이 **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**을 **초과**하는 경우에 성과급을 지급

□ 성과급 구성

○ **성과급**은 **목표성과급, 조직성과급, 장기성과급**으로 구성, **최대 성과급 지급비율**은 운용본부 전체 **기본급 총액의** 130%까지임

○ **(목표성과급: 60~90%)** 운용본부 전체성과에 따른 **목표달성에 대한 보상**으로 **모든 직군에 지급**

- **목표성과급 지급액**은 운용본부 전체 **기본급총액의 60%**와 **3개년 가중 정량평가 성과지수의 곱**으로 결정

○ **(조직성과급: 20%)** 운용체계 개선을 위한 **조직전체의 노력도**를 평가하여 **모든 직군에 지급**

- **조직성과급 지급액**은 운용본부 전체 **기본급총액의 20%**와 **3개년 가중 정성평가 성과지수의 곱**으로 결정

○ **(장기성과급: 20%) 장기성과 창출**에 대한 **보상**으로 지급

- **장기성과급 지급액**은 운용본부 **지급대상자*** **기본급총액의 20%**와 **5개년 평균 기금전체 목표달성률의 곱**으로 결정

* 평가대상 연도 말 기준 기금운용본부 5년 이상 재직한 운용전문인력

Ⅱ. 성과급 지급 최소기준 달성 여부

□ 국민연금기금의 3년('13년~'15년) 평균 운용수익률(4.66%)*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(1.10%)**을 초과하였으므로 성과급 지급 요건을 충족함

* (운용수익률) '13년: 4.16%, '14년: 5.25%, '15년: 4.57%

** (소비자물가상승률) '13년: 1.31%, '14년: 1.27%, '15년: 0.71% (출처: 한국은행)

Ⅲ. 성과급 산정

□ 목표성과급

(운용직) 운용본부 기본급 총합 × 60% × 3개년 가중 정량평가 성과지수
(본부장) 본부장 기본급 × 70% × 3개년 가중 정량평가 성과지수

○ 기본급 총합 : 14,141백만원

○ 3개년 가중 정량평가 성과지수 : 13.2

[3개년 가중 정량평가 성과지수 도출 방법]

▸ **연도별 정량평가 성과지수를 도출하고,** 각 년도별 **비중을 달리하여 가중 합산**

- **연도별 정량평가 성과지수**(100점 만점)는 **정량평가**(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로 평가)로 산출

구 분	성과지수(A)	장기평가 비중(B)	A × B
'13년	32.0	20%	6.4
'14년	10.6	30%	3.2
'15년	7.2	50%	3.6
3개년가중 성과지수	-	-	13.2

* '15년도 정량평가 성과지수 산정 내역은 [설명자료1] 참조

○ **'15년도 운용본부 목표성과급은 1,117백만원**

- **운용직의 목표성과급**은 기본급의 **7.9%**로 결정

  * **개인별 목표성과급**은 소속팀의 성과, 개인성과 및 개인 성과급 목표에 의해 **차등 지급**

- **본부장의 목표성과급**은 기본급의 **9.2%**로 결정

□ 조직성과급

(운용직) 운용본부 기본급 총합 × 20% × 3개년 가중 정성평가 성과지수
(본부장) 운용직과 동일

○ **기본급 총합 : 14,141백만원**

○ **3개년 가중 정성평가 성과지수 : 79.1**

[3개년 가중 정성평가 성과지수 도출 방법]

▸ **연도별 정성평가 성과지수를 도출하고,** 각 년도별 **비중을 달리하여 가중 합산**

- **연도별 정성평가 성과지수**(100점 만점)는 **정성평가**(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에서 평가)로 산출

구 분	성과지수(A)	장기평가 비중(B)	A × B
'13년	81.0	20%	16.2
'14년	80.3	30%	24.1
'15년	77.5	50%	38.8
3개년가중 성과지수			**79.1**

* '15년도 정성평가 성과지수 산정 내역은 [설명자료2] 참조

○ **'15년도 운용본부 조직성과급은 2,234백만원**

- 운용본부 및 본부장의 **조직성과급**은 기본급의 **15.8%**로 결정

  * **개인별 조직성과급**은 소속팀의 성과, 개인성과 및 개인 성과급 목표에 의해 **차등 지급**

□ 장기성과급

(장기재직 운용직) 지급대상자 기본급 총합 × 20% × 5개년 평균 기금전체 목표달성률

○ 지급대상자 기본급 총합 : 4,850백만원

○ 5개년 평균 기금전체 목표달성률 : -26.3

[5개년 평균 기금전체 목표달성률 도출 방법]

▸ 연도별 기금전체 목표달성률을 도출하고, 5개년 평균

- 연도별 기금전체 목표달성률은 초과수익률/목표초과수익률로 계산

구 분	초과수익률	목표초과수익률	목표달성률
'11년	0.05%p	0.45%p	10.7%
'12년	-0.32%p	0.41%p	-77.1%
'13년	0.14%p	0.38%p	36.7%
'14년	0.04%p	0.20%p	17.7%
'15년	-0.30%p	0.25%p	-119.4%
5개년 평균	-		-26.3%

○ '15년도 운용본부 장기성과급은 미지급

- 5개년 평균 기금전체 목표달성률 값이 음(-)으로 미지급함

Ⅳ. 2015년도 성과급 지급률(안)

□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 : 23.7% (목표 7.9% + 조직 15.8%)

* 기금운용본부장 성과급 지급률 : 25.0% (목표 9.2% + 조직 15.8%)

□ 연도별 성과급 지급률 현황

○ '15년도 성과급 지급률은 23.7%로 '14년도(19.0%) 대비 4.7%p 증가

평가대상연도		2011	2012	2013	2014	2015
성과급 지급률	기금운용본부 (본부장)	9.1% (11.4%)	16.3% (19.0)%	20.3% (23.7%)	19.0% (22.2%)	23.7% (25.0%)
	목표성과급 (본부장)	9.1% (11.4%)	16.3% (19.0%)	20.3% (23.7%)	19.0% (22.2%)	7.9% (9.2%)
	초과이익성과급	-	-	-	-	
	조직성과급 (본부장)					15.8% (15.8%)
	장기성과급					-

* 조직성과급은 기존 목표성과급의 정성부분을 별도의 성과급으로 분리 지급

< 참고: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현황 >

평가대상연도	2011	2012	2013	2014	2015
인 원(명)	103	125	153	159	207
지급액(천원)	627,804	1,341,430	2,070,965	2,177,627	3,351,334
1인당평균지급액(천원)	6,095	10,731	13,536	13,696	16,190

○ 이는 '14년 12월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체계를 개선*(기금위 의결 '14.12.12)하고 **'15년도 성과에 성과급 지급체계 변경안을 처음 적용한 결과**임

*** 성과급 지급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(참고자료1) 및 기대효과**

변경 전	변경 후	사유
· 목표성과급(정량+정성) · 초과이익성과급(정량)	· 목표성과급(정량)	· 기존 목표성과급의 정량평가 부분과 초과이익성과급을 통합 재구조화
<신설>	· 조직성과급(정성)	· 기존 목표성과급의 정성평가 부분
<신설>	· 장기성과급(정량)	· 장기 재직자의 장기성과 창출에 대한 보상
○ (기대효과) 성과급 인상으로 경쟁운용기관과 보상격차 완화 - 개정(안) 반영시 기본급 대비 성과급 지급률 수준은 '13년 기준 10.0%p 상승(20.3% → 30.3%)		

Ⅴ.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

□ 심의결과 : 원안대로 심의·의결

□ 논의결과

○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는 ‘14년 12월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개선한 성과급 지급체계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기금운용본부장의 성과급 지급률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

○ 성과급 지급체계 개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의 보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 지급률을 10%p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한 바 있었음

○ ‘14년도 성과급 지급률(19.0%)과 비교시, ’15년도 지급률은 23.7%로 4.7%p 증가하였으나, 실 지급률 10%p 인상에는 미치지 못 하였음

- 이는 금융부문 전체의 초과성과가 30bp 하회하면서 목표성과급 지급률(7.9%)이 낮게 산출된 것에 기인함

○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는 성과급 지급체계 개선안이 ‘15년도 성과급에 처음 적용한 결과, 보수(기본급+성과급)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음

- 다만, 향후 성과급 지급률 결정시, 기금운용의 초과성과가 BM 대비 크게 하회할 경우의 성과급 지급 방식과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평가 기간을 임기와 연계하는 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

Ⅵ. 실무평가위원회 논의 결과

□ 논의 결과

○ 기금의 벤치마크 대비 초과성과가 낮은데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질의·응답이 있었음

- ‘14년말 국민연금 성과급 지급체계 개선안을 확정할 당시, 기금운용역의 시장대비 낮은 보수수준을 감안, 실질적인 보수 인상이 가능하도록 성과급 지급체계를 개편하였고, 그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결정된 것임을 설명.

○ 기금운용성과가 BM 대비 저조할 경우 성과급 지급률 산정 방식과 정성평가 방식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

참고자료1 **성과평가보상지침 주요 개정내용**('14.12.12. 기금위 의결)

□ **적용시기** : '15년도 귀속 성과급을 지급하는 '16년 지급부터 적용

□ **기금규모의 증가와 운용환경의 변화**를 반영하여 **기존 성과평가보상체계**('08년 수립)의 보상경쟁력·형평성 등 개선 필요

○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('13.6.4.)는 기금운용의 성과유인 제고를 위해 **성과보상체계**를 재점검하고 **개선방안을 마련**할 것을 권고*

* 2013년도 전문위원회의 정책제언 및 '14년 정성평가 과제로 채택

□ **성과급 구성 및 지급기준**

○ **(성과급 유형)** 성과급 유형을 「**목표성과급**(최대 90%), **조직성과급**(최대 20%), **장기성과급**(최대 20%)」으로 개정(제19조)

○ **성과급 지급기준 (제20조)**

- **(지급대상) 운용전문인력**(운용직, 운용관리직, 운용지원직)에게 지급하되, **장기성과급**은 **5년 이상 재직한 운용직** 대상 지급
- **(지급시기)** 평가대상 연도 **익년에 일괄 지급**하되, **목표성과급이 기본급의 60%를 초과**하는 부분은 **1년 이연** 지급

□ **성과급 산정**

○ **(목표성과급, 제21조)** 기금운용본부 기본급 총합×60%×3개년 가중 정량평가 성과지수

- 정량평가(80%), 정성평가(20%)에 의해 지급하던 것을, **정량평가(100%)에 의해서만 지급**하고, 평가항목 중 **금융부문계의 평가비중을 40%에서 60%로 확대**

- **각 평가항목**에 대한 **목표달성도는 최소 0에서 최대 1.5까지** 성과급 계산에 반영

○ **(조직성과급, 제22조)** 기금운용본부 기본급 총합×20%×3개년 가중 정성평가 성과지수

- 조직성과급을 신설하여 정성평가는 **전문위원회가 선정한 과제별 평가비중**과 **평가점수의 곱**을 합산하여 성과지수 결정

○ **(장기성과급, 제23조)** 대상자 기본급 총합×20%×5개년 평균 기금 전체 목표달성률

- **장기성과급을 신설**하여 5년 이상 재직한 운용직을 대상으로 **5개년 평균 기금전체 초과성과 달성률에 따라 지급**

[성과급 구조 변경]

<개정 전>

구분	목표성과급(60%)	초과이익성과급(40%)
목적	운용본부 전체성과에 따른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	자산군별로 목표수준 (목표 초과수익률) 이상의 추가적 재무성과에 대한 보상
평가기간	3개년 가중(5:3:2)	
평가방식	정량평가, 정성평가	정량평가
지급 대상	운용전문인력* 및 본부장 (*운용직, 운용관리직, 운용지원직)	운용직 및 본부장
성과급 총액	운용본부 기본급 총합 × 60% × 3개년 가중 운용본부 성과지수	자산별 기본급 총합 × 목표 초과달성률* × 80% *기금 전체 성과 20%, 각 자산군 등 80%로 가중평균, 최대치는 50%
비고	운용본부 성과지수 = ∑(평가항목* 별 평가비중×목표달성도) (* 정량평가 80%, 정성평가 20%)	목표 초과달성률 = (실제 초과수익률 – 목표 초과수익률) / 목표 초과수익률

⇩

<현 행>

'16년 성과급 지급부터 적용

구분	목표성과급(60~90%)	조직성과급(20%)	장기성과급(20%)
목적	기금 전체 및 개별 자산군의 초과수익에 대한 보상	운용체계 개선을 위한 조직 전체의 정성적 노력 제고	장기성과 창출에 대한 보상
평가기간	3개년 가중(5:3:2)		5개년 평균
평가방식	정량평가	정성평가	정량평가
지급대상	운용전문인력* 및 본부장 * 운용직, 운용관리직, 운용지원직	운용전문인력 및 본부장	5년 이상 재직한 운용전문인력
성과급 총액	기금운용본부 기본급 총합의 60% × 3개년 가중 정량평가 성과지수	기금운용본부 기본급 총합의 20% × 3개년 가중 정성평가 성과지수	지급대상자 기본급 총합의 20% × 5개년 평균 기금전체 목표달성률
비고	정량평가 성과지수 = ∑(평가항목* 별 평가비중 × 목표달성도) (* 기금 전체 및 개별자산군 등)	정성평가 성과지수 = ∑(과제 별 평가비중×평균점수)	목표달성률 = 실제 초과수익률 / 목표 초과수익률

설명자료1 | **'15년도 정량평가 성과지수 산정 내역**

□ '15년도 정량평가 성과지수(7.2) = 해외주식 7.2

< '15년도 목표성과 점수 >

(단위 : %, %pt.)

구 분		평가 비중	수익률 (A)	BM (B)	초과 (A-B)	목표 알파	목표[1] 달성률	목표[2] 달성도	성과[3] 지수
정량평가	금융부문계	60	4.57	4.87	-0.30	0.25	-119.4	0.0	0.0
	전술적 자산배분	10	-0.53	0.00	-0.53	0.04	-1,324.2	0.0	0.0
	국내주식	10	1.67	3.88	-2.21	0.57	-388.1	0.0	0.0
	국내채권	10	4.26	4.27	-0.02	0.04	-45.0	0.0	0.0
	해외주식	5	5.73	4.23	1.50	1.04	144.4	144.4	7.2
	해외채권	5	1.52	2.29	-0.77	0.33	-233.6	0.0	0.0
	합계	100							7.2

주1) 목표달성률 = (수익률 - BM)/목표알파
2) 0 ≤ 목표달성도 ≤ 150
3) 성과지수 = Σ (평가항목별 평가비중 × 목표달성도)
4) 반올림에 의한 단수 차이 있음

설명자료2 | **'15년도 정성평가 성과지수 산정 내역**

□ '15년도 과제*별 평균점수 : 77.5

* **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**에서 성과평가 결과 및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정성평가과제 **설정 및 평가**

<'15년도 정성평가 과제 및 점수>

정성평가 과제	과제별 점수
1. 글로벌 세금정보 교환제도 강화와 기금의 해외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	85.4
2. 운용체계 변경에 따른 전술적 벤치마크 검토 및 재설정	74.3
3. 글로벌 시장 변동성 감소에 따른 액티브 운용제약 극복 방안 마련	72.5
4. 단기자금 운용역량 강화방안	79.7
5. 대체투자 성과평가 벤치마크 검토 및 조정	75.8
평 균	**77.5**